

(재)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58
----------	------

2025. 10. 17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30. 광양시장
- 나. 회부 일자: 2025. 9. 30. 회부
- 다. 상정 일자: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(2025. 12. 04.) 상정,
“수정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(재)백운장학회 2026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-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(재)백운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출연: 3,093백만원

3. 검토 의견

- 이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30억 9천 3백만 원을 백운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

-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,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이 없으며,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연차별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니,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학금이나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.

※ 장학금 지급안 비교표

구 분	당초(제332회 임시회)	변경(안)
거기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부모 또는 보호자)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②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, 관내 초·중·고 재학 기간 합산이 3년 이상인 자 ① + ② 모두 충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부모 또는 보호자)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자 ※ 직업상 타 지역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 예외 인정 ② (학생 본인)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① + ② 모두 충족
지대 원상	·(전문)대학교 재학생	·만34세 이하 (전문)대학교 재학생 ※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
생기 활준	·소득수준 무관	·소득수준 무관
성기 적준	·B학점 이상(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- (적용 제외)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첫 학기	·C학점 이상 - (적용 제외)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첫 학기 제외
지유 원형	·등록금 장학금	·생활비 장학금
지급 원액	<p><학생 장학금 지급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주민등록 합산 또는 초·중·고 졸업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- (100%) 관내 초·중·고 졸업 또는 주민등록 7년 이상 - (70%) 관내 중·고 졸업 또는 주민등록 5년 이상 7년 미만 - (50%) 관내 고 졸업 또는 주민등록 3년 이상 5년 미만 	<p><학생 거주기간별 차등 지급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연 최대 340만원 - (100%, 340만원) 주민등록 7년 이상 - (70%, 238만원) 주민등록 5년 이상 7년 미만 - (50%, 170만원) 주민등록 3년 이상 5년 미만
지희 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정규학제별 최대 지원횟수내 지원 - (2년제) 4회, (3년제) 6회, (4년제) 8회, (5년제) 10회 ※ 편입학(재입학) 지원 횟수 누적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최대 8학기 지원 - (2년제) 4회, (3년제) 6회, (4년제) 8회, (5년제) 8회, (6년제) 8회 ※ 편입학(재입학) 지원 횟수 누적 관리
미진학년상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청년 취업 준비 지원 사업 - (거주기준) 생활비 장학금과 동일 (① + ② 모두 충족) - (나이기준)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미진학 자(4년 이내) - (지원금액) 1인당 최대 연 240만원 이내 실비, 취업 성공 수당 100만원 ※ 취업 준비 지원 사업 수혜자가 향후 대학 진학 시 기 수혜받은 금액 공제 - (주요내용) 자격증 시험 응시료, 수강료 지원 등
소요 예산 (전학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1,950백만원(1개학년) ※ 78억원/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2026년 소요예산: 3,093백만원(1개학년) ※ 123.7억원/년
소요 재원	·시 출연금	·시 출연금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수정의결(출석위원 6명)

☞ 동의안 중

"지원금액: 연 최대 340만원(학생 거주 기간별 차등)"을

"지원금액: 연 최대 350만원(학생 거주 기간별, 소득 기준별 증액)"으로 하고,

"출연금액: 3,093백만원"을 "2026년 출연금액: 2,276백만원"으로 수정

구 분	변경(안)	수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 기 주 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부모 또는 보호자)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자 ※ 직업 상 타 지역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 예외 인정 ② (학생 본인)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① + ② 모두 충족 	좌 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 대 원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34세 이하 (전문)대학교 재학생 ※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 	좌 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 기 전 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C학점 이상 - (적용 제외)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첫 학기 제외 	좌 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 유 원 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비 장학금 	좌 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 금 원 액	<p>〈학생 거주기간별 차등 지급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최대 340만 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00%, 340만 원) 주민등록 7년 이상 (70%, 238만 원) 주민등록 5년 이상 7년 미만 (50%, 170만 원) 주민등록 3년 이상 5년 미만 	<p>〈학생 거주기간별, 소득기준별(6구간) 차등 지급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최대 350만 원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원구간</th> <th>기초·차상위</th> <th>1~3</th> <th>4~6</th> <th>7~8</th> <th>9</th> <th>10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급</td> <td>100%</td> <td>350</td> <td>320</td> <td>290</td> <td>260</td> <td>230</td> <td>200</td> </tr> <tr> <td>금액</td> <td>70%</td> <td>245</td> <td>224</td> <td>203</td> <td>182</td> <td>161</td> <td>14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50%</td> <td>175</td> <td>160</td> <td>145</td> <td>130</td> <td>115</td> <td>1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학생 거주기간별 - (100%) 주민등록 7년 이상 - (70%) 주민등록 5년 이상 7년 미만 - (50%) 주민등록 3년 이상 5년 미만</p>	지원구간	기초·차상위	1~3	4~6	7~8	9	10	지급	100%	350	320	290	260	230	200	금액	70%	245	224	203	182	161	140		50%	175	160	145	130	115	100
지원구간	기초·차상위	1~3	4~6	7~8	9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급	100%	350	320	290	260	230	200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액	70%	245	224	203	182	161	140																										
	50%	175	160	145	130	115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 원 희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8학기 지원 - (2년제) 4회, (3년제) 6회, (4년제) 8회, (5년제) 8회, (6년제) 8회 ※ 편입학(재입학) 지원 횟수 누적 관리 	좌 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금 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연금액: 3,093백만 원(1개학년) ※ 12,372백만 원/년(전학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6년 출연금액: 2,276백만 원(1개학년) ※ 9,104백만 원/년(전학년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 요 재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 출연금 	좌 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(재)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

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

[재]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

1. 제안이유(필요성)

-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(재)백운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출연 : 3,093백만원

3. 출연금 사용계획

- 목 적: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지급
- 지원시기: (상반기) 접수 3월, 지급 5월 / (하반기) 접수 9월, 지급 11월
- 지원대상: 만34세 이하 (전문)대학교 재학생(직전 학기 C학점 이상)
- (2026년) 정규학제 최종학년(예시. 4년제 4학년)에서 → (2029년) 전체학년

구 분(4년제 기준)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대학생 생활비 장학금	4학년	3~4학년	2~4학년	전체학년

- 거주기준 : ① + ② 모두 충족

① (부모 또는 보호자)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자

② (학생 본인)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

○ 지원금액: 연 최대 340만원(학생 거주 기간별 차등)

구 분	지원기준	
장학금 지원율	340만원(100%)	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7년 이상
	238만원(70%)	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5년 이상 7년 미만
	170만원(50%)	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3년 이상 5년 미만

○ 지원횟수 : 최대 8학기 지원

- (2년제) 4회, (3년제) 6회, (4년제) 8회, (5년제) 8회, (6년제) 8회

※ 편입학 및 재입학 시 지원횟수 누적 관리

○ **출연금액: 3,093백만원**

※ 연차별 필요 사업비 추계

(단위 : 백만원,명)

구 분	2026년 (1단계, 최종학년)	2027년 (2단계, 4-3학년)	2028년 (3단계, 4-2학년)	2029년 (4단계, 전학년)
생 활 비 장 학 금 출 연 금	3,093	6,186	9,279	12,372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「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 제5조

제5조(재산의 조성) ① 제4조에 따른 장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광양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출연금

2. 개인, 법인·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

3. 기금운영의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